

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안내

 **복권위원회**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.

융자대상

융자종류	대 상
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	■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251만원(‘19년 기준) 이하인 노동자 ※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일 것 ※ 비정규직(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)노동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※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월평균소득 308만원(‘19년 기준) 적용
임금감소생계비	■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3개월 이상 감소하였을 것 ② 감소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% 이상 감소하였을 것 ③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76만원(‘19년 기준)이하일 것 ※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월평균소득 216만원(‘19년 기준) 적용
소액생계비	■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융자대상 월소득이 직전달 월소득에 비해 30% 이상 감소하였을 것 ② 융자대상 월소득이 176만원(‘19년 기준)이하일 것 ※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※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융자대상 월소득 216만원(‘19년 기준) 적용
임금체불생계비	■ 가동 중인(휴업포함)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노동자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 것 ② 연간 소득액(배우자 합산)이 5,537만원(‘19년 기준) 이하일 것 ※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고, 체불임금이 590,650원(‘19년 기준)이상일 것
◆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받은 노동자는 재직 중으로 판단함	

융자요건 및 한도액

융자종류	융자요건	신청기한	한도액
의료비	■ 노동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,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(또는 납부하여야 할) 비용 ②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③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이용에 든 비용	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	1,000만원(실제 비용 내)
혼례비	■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	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	1,250만원
장례비	■ 노동자 본인, 배우자, 노동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	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	1,000만원
부모요양비	■ 노동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모든 비용	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	부모(또는 조부모) 1명당 연 500만원
자녀학자금	■ 노동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※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대학교 재학 자녀 포함	자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기간 중	자녀 1명당 연 500만원 ※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자녀 1명당 연 700만원
임금감소생계비	■ 노동자가 소속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	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	1,000만원(감소임금 범위)
소액생계비	■ 노동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,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	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	200만원
임금체불생계비	■ 임금체불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	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	1,000만원(체불임금 범위) ※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2,000만원
◆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총 융자한도 2,000만원 이내			

융자조건

융자금리	연 2.5%			
보증방법	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※ 보증료: 연 0.9%(임금체불생계비 1.0%) 별도 선공제(본인부담)			
상환기간	일반노동자	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	중 선택	
	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	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		중 선택
		◆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 균등분할상환(고정)		
		◆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(연체, 회생, 파산, 신용회복 등) · 외국인 · 재외동포 보증지원 불가		

신청 및 처리절차

신청	인터넷: 근로복지서비스(http://welfare.kcomwel.or.kr) 또는 정부24(http://www.gov.kr) 방 문: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(전국 59개소) ※ 팩스접수 불가
처리절차	신청서 접수 ▶ 관할지사 배정 ▶ 담당자 확인 ▶ 예비선정 ▶ 서류제출(예비선정자에 한함) ▶ 융자대상자 결정 ▶ 신용보증서 발행 ▶ 기업은행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한 대출실행 (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)



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,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.
 ※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: 우리 공단 홈페이지(www.kcomwel.or.kr)
 고객센터마당 내 Help-Line(헬프라인) 또는 사이버 감사실

